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결과 심의 검토보고

[성북구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

2024. 11. 28.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한상규

1. 연구단체 운영 현황

연구단체명	구성인원	대표의원
성북구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	5명	이관우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성북구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 심의.

3. 심의 대상 연구단체

- 성북구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소요예산 : 5,000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9,105만원 10%이내 : 19,000천원)

5. 검토보고

- 연구활동 결과보고

연구단체명		성북구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
연구내용	연구주제	성북구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연구목적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이해하고, 성북구의 재개발·재건축 현황 및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연구결과	(별 첨)

연구 활동비	수령액	금오백만원 (₩5,000,000)	
	집행액	금사백일십육만칠천구백원 (₩4,167,900)	
	잔액	금팔십삼만이천일백원 (₩832,100)	
	집행내역	강사비	금삼십육만원 (₩360,000)
		인쇄비	금이백이십육만육천원 (₩2,266,000)
		홍보비	금이십오만삼천원 (₩253,000)
		회의비	금일백이십팔만팔천구백원 (₩1,288,900)
		결과보고서 제작비용	금일백칠십구만팔천오백원 (₩1,798,500)
연구 용역비	수령액/ 집행액	해당없음	

■ 검토의견

- 2024년 11월 ‘성북구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 연구단체가 10월 주만을 대상으로 연구결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 2013년 11월 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하고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 심의내용은 연구 활동비 책정과 배분,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1억 9,105만원)의 10% 이내에서 지원하고,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10조 제2항 1호 및 2호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1. 연구 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및 여비, 2.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지문경비, 세미나 공청회·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어, 검토결

과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 활동비 집행내역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를 검토 한 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였는데 특히, 성북구는 지역 여건상 노후된 주택 밀집 지역이 많아 재개발 재건축 추진에 주민의 관심이 많은데, 이에 성북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이해하고, 성북구의 재개발·재건축 현황 및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종암동 125번지 등 성북구 관내의 재개발 현장 방문과 더불어 해당부서 직원과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와 토론회를 주체하였으며

성북구 주민 주거복지를 개선하고 삶의질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결과를 지난 10월에 구청 다목적홀에서 다수의 주민을 초청하여 연구결과와 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연구활동 결과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1) 제9조(의원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에서 지원하고,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7.)
- ② 연구단체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2019.3.7.)
- 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개정 2019.3.7.)
- ④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2) 제13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성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